

○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○ □ 주요골자

- 채무보증신청에 의거 기 채무보증 승인 후에는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 누구에게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4조제1항)

- 주 채무의 내용 변경시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위하여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 함. (안 제5조)

○ □ 검토의견

-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(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)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지 방 제 정 법 시 행 령

제21조(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)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·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